

| | |
|-----------|----------------|
| 의안번호 | 제 862 호 |
| 의결 연월일 |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862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발 의 자 : 이의영,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장선배, 허창원
임영은

1. 제안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살위험자”, “자살유발정보” 등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족과 유족 명칭을 구분 사용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살위험자”, “자살유발정보”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자살시도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 포함 (안 제6조, 제10조)
- 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안 제9조제2항)
 - (현행) 여성정책관 → (개정) 여성가족정책관
- “자살자의 가족” 을 “자살자의 유족” 으로 변경 (안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5조, 제20조)
 - (현행) 자살예방지킴이 → (개정) 생명지킴이
 - (현행) 자살유해정보 → (개정) 자살유발정보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105호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을 “예방정책에 필요한” 으로 하고, “생명존중 문화” 를 “생명존중문화”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 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 를 “자살위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가족을” 을 “유족을”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자살자의 가족” 을 “자살시도자의 가족 및 자살자의 유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유가 없는 한” 을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호선한다” 를 “선출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여성정책관” 을 “여성가족정책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충북지방경찰청장” 을 “충청북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한차례만 연임할 수있으며” 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로 하고, “잔여기간” 을 “남은기간” 으로 한다.

제9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제2항 중 “자살자의 가족” 을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가족에” 를 “유족에” 로 하고, “전후의” 를 “앞뒤의” 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가족의” 를 “유족의” 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유가 없는 한” 을 “사유가 없으면”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가족에” 를 “유족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 을 “필요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자살예방지킴이” 를 “생명지킴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 을 “필요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 1인” 을 “수행할 때, 1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 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 시도자 등” 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을 각각 “자살시도자 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을 “자살시도자 등”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소방본부
4. 충청북도경찰청

제19조 중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 를 “실시할 때, 자살자” 로 하고, “가족” 을 “유족·가족”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을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유해정보가” 를 “자살유발정보가” 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를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를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를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로 한다.

4.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u>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u>생명존중 문화</u>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u>예방정책에 필요한</u>----- ----- ----- ----- <u>생명존중 문화</u>----- --.</p> |
| <p>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u>감안하여</u>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p> | <p>제2조(기본정책) ----- ----- ----- -----<u>고려하여</u>----- ----- ----- -----.</p> |
| <p><u><신 설></u></p> | <p><u>제2조의2(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살위험자</u>”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u>자살유발정보</u>”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시하는 정보</u></p> <p><u>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u></p> <p><u>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u></p> <p><u>마.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u></p> <p>3. <u>“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u></p> |
|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u>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u>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u>가족을</u>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p> |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u>자살위험자</u>----- ----- ----- ----- -----.</p> <p>② ----- ----- ----- ----- ----- -----.</p> <p>----- <u>유족을</u> ----- -----.</p> |

| | |
|---|--|
| <p>9.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차례만</u>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⑤ ~ ⑥ (생 략)</p> | <p>9.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으며, ----- ----- ----- <u>남은기간</u>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
| <p>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p>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p> |
| <p>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생 략)</p> <p>②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u>자살자의 가족</u>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 <p>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u>----- -----.</p> |
| <p>제12조(심리부검) 도지사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u>가족</u>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u>전후</u>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u>가족</u>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p>제12조(심리부검) ----- ----- ----- ----- <u>유족</u>에 ----- -----<u>앞뒤의</u>----- ----- -----. ----- ----- ----- <u>유족</u>의 -----.</p> |

| | |
|--|--|
| <p>제13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u> 이에 따라야 한다.</p> | <p>제13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사유가 없으면</u> ----- -----.</p> |
| <p>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자살자의 <u>가족에</u>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p> <p>8.·9. (생략)</p> <p>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u>소요되는</u>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를 따른다.</p> | <p>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유족에</u>----- -----</p> <p>8.·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필요한</u>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p> |
| <p>제15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p> | <p>제15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 -----</p> |

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2. ~ 4.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생명지킴이 -----
2. ~ 4. (현행과 같음)

② -----

-----필요한-----
-----.

③ -----수행할 때, 1인-----
-----.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
2.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3.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으로 한다)-----

-----.

1. 자살시도자 등-----

2. 자살시도자 등-----

3. 자살시도자 등-----

4. -----자살시도자 등-----

| | |
|---|--|
| <p>의 가족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프로그램</p> <p>② (생략)</p> | <p>----- -----</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7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 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충청북도 소방본부</p> <p>4. 충청북도 지방경찰청</p> <p>5. · 6. (생략)</p> <p>② (생략)</p> | <p>제17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①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충청북도소방본부</p> <p>4. 충청북도경찰청</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9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 자살시 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 <p>제19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 실시할 때, 자살자----- ----- 유족·가족 ----- -----.</p> |
| <p>제20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 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 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 <p>제20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자살유발정보가 ----- -----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p> <p>1. · 2. (현행과 같음)</p> |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4.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5. (현행과 같음)

② -----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
-----.

관계법령 발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호(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의 조항 신설, 명칭 구분에 대해 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